

<산업체 위탁교육>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

☐ 대입 원서접수 및 대입 전형에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이며, 이외의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.

1. 개인정보 수집항목 : 이름, 주민등록번호(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등의 경우 :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)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E-mail, 추가 연락처, 모집단위(지방학과), 학교정보 [최종학력구분, 재학/출신 고교명, 졸업(예정)연도, 고교 전화번호]
2.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목적 :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한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처리목적 달성 시까지(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,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.)

지원자(만14세미만의 경우, 법정대리인)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※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 동의함 /

 동의하지 않음

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

☐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, 외국인 등록번호, 여권번호 중 한 개)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※근거법령 :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지원자(만14세미만의 경우, 법정대리인)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※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 동의함 /

 동의하지 않음

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동의

☐ 대입 원서 접수 및 대입 전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수탁업체	위탁업무내용	위탁업무처리 개인정보항목	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	기타
수원여자대학교 학생취업처	장학 선발	이름, 수험번호, 주민등록번호, 모집단위명	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	
대학지점 은행	등록금 수납업무	이름, 수험번호, 모집단위명	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	
수원여자대학교 입학홍보처	녹취,충원, 입학사정	이름, 주민등록번호, 수험번호, 전형명, 지원학과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추가전화번호, 주소, 재학/출신 고교명, 졸업(예정)년도, 계좌번호, 이메일, 합격여부, 예비순위, 등록여부, 환불은행, 환불계좌번호	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	

지원자(만14세미만의 경우, 법정대리인)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※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 동의함 /

 동의하지 않음

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

☐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

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	위탁업무내용/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	제공하는개인정보항목	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	기타
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지원자출신고등학교	대학알리미에 진학정보제공	성명, 등록대학, 모집단위명	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	
한국장학재단	장학 및 학자금 대출 관련 정보 제공	이름, 수험번호, 주민등록번호, 학과, 등록금액, 등록마감일자, 입학일자, 환불계좌번호, 장학금액	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	
㈜엠엔씨에이프로	녹취,충원, 입학사정, 등록금수납	이름, 주민등록번호, 수험번호, 전형명, 지원학과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추가전화번호, 주소, 재학/출신 고교명, 졸업(예정)년도, 계좌번호, 이메일, 합격여부, 예비순위, 등록여부, 환불은행, 환불계좌번호	처리목적 달성 시 까지	

지원자(만14세미만의 경우, 법정대리인)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?

※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 거부 시 대입원서 접수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 동의함 /

 동의하지 않음

본인 확인 및 지원자격, 전형일자 확인

* 대입원서는 지원자 본인만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. 차후 이를 위반한 경우, 대학 입학 무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* 지원 대학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 지원 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
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가?

 확인함

대입 허위지원 방지와 지원 자격 조작성에 관한 확인

* 대입 허위 지원을 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
* 지원 시 지원자격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
위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가?

 확인함

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, 수험생 본인이 직접 (동의함 / 동의하지 않음)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20

년

월

지원자 확인 :

(서명)

산업체위탁교육 계약서

수원여자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과 _____회사(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“산업체”라 한다)는
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의 산업체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
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제1조 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_____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수원여자대학교에 위탁함에 따
라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2조 (위탁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)

1. 위탁교육의 과정은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학사학위과정으로 한다.
2. 모집단위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.

연 도 별	모집단위 (학과명)	위탁생		위탁생 수
		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2023학년도				총 ■ 명

※ 칸이 부족할 경우 위 <표>의 양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제3조 (위탁생의 자격) 고등학교 졸업(졸업예정자 포함)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
재직 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 _____근무 중인 자로 한다.

제4조 (위탁생의 선발과 입학) ① 위탁교육 대상자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일괄 추천한다.

②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
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회사 또는 대학의 장이 정한다.

제5조 (교육과정의 편성)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과 회사가 공동으로
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(이 경우 별도교육과정은 이 계약서의 별표로 첨부)

②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제6조 (산업체의 시설사용) 회사의 시설 사용에 합의가 있을 때에는 사용시설의 목록, 사용방법 등을 작성하고
이 약정의 별표로 첨부한다.

제7조 (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 활용) 위탁 회사의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 정하
는 바에 따라 겸임교수 또는 시간강사로 위촉(임명)할 수 있다.

제8조 (교육비 및 등록) ①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의 학생 납입금 수준으로 하되, 산업체와 협의하여
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률을 명문화할 수 있다.

②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는 위탁교육생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한다.

제9조 (위탁생의 신분) ①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수원여자대학교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,
학칙 적용을 받는다.

② 위탁생은 재학기간 중 현직에 종사하여야 하며, 재학기간 중 본인의 원에 의해 퇴직할 경우에는 학생
신분을 상실한다.

제10조 (위탁생의 준수사항) 매년 3월, 9월(연 2회) 위탁교육생들의 재직여부를 확인한다.

① 당해 대학의 학칙에 의하되, 위탁생이 자발적으로 당해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제적처리함이 원칙이지만, 위
탁생이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이직하여 대학이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
제적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.

② 산업체의 도산, 구조조정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 시 6개월 이내 이직하고 그 기간 내 새로운 산업체의 장과
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학 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적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.

③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 남은 상태에서 비자발적 퇴직 시 대학 내 「산업체위탁교육 심의위원회」의
심의를 거친 경우 제적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.

④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졸업자, 일반고 졸업생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는 본 산업체에서 **6개월간 의무 재직(매년 9월 1일 이전 퇴직 시 제적 처리)해야 한다.**

* 위의 3개월, 6개월 기준은 4대 보험 및 국가·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상의 상실일과 취득일 기간으로 산정한다.

⑤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등도 제출받아 4대 보험 증명서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.

제11조 (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) 대학에 대한 특별한 지원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약정서의 본문 또는 별표에 명시토록 한다.

제12조 (위탁교육협력위원회) 대학과 회사는 약정에 의거 산업체위탁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(이 경우 동 위원회의 기능 등 소관사항 명시)

제13조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은 수원여자대학교의 학칙 및 위탁교육 시행지침과 통상 관례에 준 한다.

20 년 월 일

수 원 여 자 대 학 교

산업체명 :

총 장

[직인]

대표이사

[직인]

